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

[시행 2023. 1. 27.] [보건복지부고시 제2023-18호, 2023. 1. 27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생명윤리정책과), 044-202-261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「생명공학육성법」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전파·확산에 따른 생물학적 위험발생을 예방하고, 생명공학연구를 촉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생물안전"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,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.
- 2. "유전자재조합분자"란 핵산(합성된 핵산 포함)을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분자로 살아있는 세포내에서 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.
- 3. "유전자재조합실험"이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물질(합성된 핵산 포함)을 세포에 도입하여 복제하거나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을 말한다.
- 4. "숙주"란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물질(합성된 핵산 포함)이 도입되는 세포를 말한다.
- 5. "벡터"란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숙주에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물질(합성된 핵산 포함)을 운반하는 수단 (핵산 등)을 말한다.
- 6. "공여체"란 벡터에 삽입하거나 또는 직접 주입하고자 하는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물질(합성된 핵산 포함)이 유래된 생물체를 말한다.
- 7. "숙주-벡터계"란 숙주와 벡터의 조합을 말한다.
- 8. "대량배양실험"이란 유전자재조합실험 중 10리터 이상의 배양용량 규모로 실시하는 실험을 말한다.
- 9. "동물을 이용하는 실험"이란 유전자변형동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말한다.
- 10. "식물을 이용하는 실험"이란 유전자변형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분자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물에 도입하는 실험을 말한다.
- 11. "실험실"이란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실시하는 방을 말한다.
- 12. "실험구역"이란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전실에 의해 다른 구역으로부터 격리된 실험실, 복도 등으로 구성되는 구역을 말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3. "연구시설"이란 전실을 포함한 실험구역으로서 안전관리의 단위가 되는 구역 또는 건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허가 신청 시의 신청단위이다.
- 14. "생물안전작업대"란 실험 중 발생하는 오염 에어로졸 등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별표 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 및 규격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.
- 제3조(실험의 안전확보) ① 시험·연구책임자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 미생물 실험실에서 이용하는 실험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물리적 밀폐와 생물학적 밀폐를 적절히 조합하여 계획하고 실험을 실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험의 위해성 평가 및 밀폐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각 시험·연구기관별로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실시한다.
 - ③ 유전자재조합실험은 해당 실험의 안전확보 절차에 따라 국가승인실험, 기관승인실험, 기관신고실험 및 면제실험으로 분류한다.

제2장 위해성 평가 및 밀폐방법

- 제4조(실험의 위해성 평가 등) ① 실험에 적합한 밀폐방법이 결정되도록 실험의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실시한다.
 - 1. 숙주 및 공여체의 위험군
 - 2. 숙주 및 공여체의 독소생산성 및 알레르기 유발성
 - 3. 생물체의 숙주 범위 또는 감수성 변화 여부
 - 4. 배양 규모 및 농도
 - 5. 실험과정 중 발생 가능한 감염경로 및 감염량
 - 6. 인정 숙주-벡터계의 사용 여부
 - 7. 환경에서의 생물체 안정성
 - 8.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효과적인 처리 계획
 - 9.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의 유효성
 - ② 실험의 밀폐등급은 숙주 및 공여체 중 가장 높은 위험군에 대응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, 제 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요소에 의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실험의 밀폐등급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.
- 제5조(생물체의 위험군 분류)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숙주 및 공여체의 위험군 분류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하며, 위험군별 해당 생물체 목록은 별표 2와 같다.
 - 1. 제1위험군: 건강한 성인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체
 - 2. 제2위험군 :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지 않고 예방 또는 치료가 비교적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수 있는 생물체
 - 3. 제3위험군 :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도 있으나 예방 또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

- 4. 제4위험군 :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경우 증세가 매우 심각하거나 치명적이며 예방 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생물체
- ② 별표 2의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별표 2의 위험군 분류 목록에 대한 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1. 해당 생물체의 병원성
- 2. 해당 생물체의 전파방식 및 숙주범위
- 3. 해당 생물체로 인한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 조치
- 4. 인체에 대한 감염량 등 기타 요인

제6조(물리적 밀폐) ① 물리적 밀폐는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의 공학적, 기술적 설치 및 관리·운영을 말한다.

- ② 일반적인 생물안전 밀폐연구시설 등급은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.
- 1. 생물안전 1등급 : 제1위험군 취급 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별표 3의 생물안전 1등급의 설치·운영기준을 준수한다.
- 2. 생물안전 2등급 : 제2위험군 취급 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별표 3의 생물안전 2등급의 설치·운영기준을 준수 한다.
- 3. 생물안전 3등급 : 제3위험군 취급 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별표 3의 생물안전 3등급의 설치·운영기준을 준수한다.
- 4. 생물안전 4등급 : 제4위험군 취급 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로 별표 3의 생물안전 4등급의 설치·운영기준을 준수하다.
- ③ 대량배양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대량배양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,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- ④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동물 이용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,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- ⑤ 식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식물 이용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,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- ⑥ 곤충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곤충 이용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,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 ·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- ⑦ 어류를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어류 이용 생물안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, 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- ⑧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생물안전 1, 2등급 연구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, 인체위해성 관련 생물안전 3, 4등급 연구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⑨ 물리적 밀폐기준 이외에, 숙주·공여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아래 각 호의 특성에 근거하여 생물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해당 생물체의 숙주범위, 생활사, 전파방식
- 2. 해당 생물체의 침입성, 기생성, 정착성, 병원성
- 3. 해당 생물체로 인한 인체 대사계 및 면역계로의 영향 등
- 제7조(생물학적 밀폐) ① 생물학적 밀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내 전파·확산 방지 및 실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특수한 배양조건 이외에는 생존하기 어려운 숙주와 실험용 숙주 이외의 생물체로는 전달성이 매우 낮은 벡터를 조합시킨 숙주-벡터계를 이용하는 조치를 말한다.
 - ② 생물학적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-벡터계는 별표 9와 같으며, 동 인정 숙주-벡터계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숙주-벡터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관련된 병원성, 독소 생산능력, 기생성 및 정착성, 발암성, 약제내성, 대사계 및 면역계로의 영향, 숙주 의존성 등 관련 자료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제3장 안전확보 절차에 따른 실험의 분류

- 제8조(국가승인실험) 국가승인실험은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실험이다.
- 제9조(기관승인실험) ① 기관승인실험은 시험·연구기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실험으로 해당 실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제2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숙주-벡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
 - 2. 대량배양을 포함하는 실험
 - 3.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% 치사독소량(LD50)이 0.1μg 이상 100μg 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. 해당 단백성 독소는 별표 10과 같다.
 - ② 기관승인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·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·연구기관장에게 제출한다.
 - 1. 위해성 평가서
 - 2. 연구계획서
 - ③ 시험·연구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출자료를 심사하고,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서 또는 유전자재조합실험불승인서를 시험·연구책임자에게 교부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실험승인을 받은 시험·연구책임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·연구기관장에게 제출한 다. 이 경우 심사 및 결과통보는 제3항을 준용한다.
 - 1. 별지 제2호서식의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서
 - 2. 승인사항 변경에 따른 위해성 평가서
 - 3. 변경된 연구계획서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0조(기관신고실험) ① 기관신고실험은 시험·연구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실험으로 해당 실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제1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-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(제9조 제1항 각 호 및 별표 11에 해당하지 않는 실험에 한한다.)
 - 2. 기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실험
 - ② 기관신고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·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시험·연구기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전 자재조합실험신고서에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
- 제11조(면제실험) ① 면제실험은 국가승인 또는 기관승인・신고 없이 수행 가능한 실험으로 해당 실험은 별표 11과 같다. 다만, 별표 11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은 면제실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.
 - 1. 제3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이용하는 실험
 - 2.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실험
 - ② 면제실험을 수행하는 시험·연구책임자는 생물체의 위험군을 고려하여 적절한 밀폐등급 연구시설 내에서 실험을 수행한다.

제4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

제12조(보관)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1.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한 시료 및 폐기물은 "유전자변형생물체"라는 것을 표시하고, 정해진 수준의 물리적 밀폐 조건을 만족하는 실험실, 실험구역 또는 대량배양 실험구역에 안전하게 보관한다.
- 2.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는 시료를 보관하는 냉장고 및 냉동고 등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 중임을 표시한다.
- 3. 시험·연구책임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는 시료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제13조(운반) ① 시험·연구기관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는 시료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새지 않는 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운반한다.
 - ② 다른 시험・연구기관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쉽게 파손되지 않는 용기에 넣고 이중으로 밀봉 포장하여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용기 또는 포장물 표면의 보이기 쉬운 곳에 "유전자변형생물체"라는 것을 표시한다.

제14조(양도) 삭제

- **제15조(실험종료 후 처리)** ① 실험종료 후에는 각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적합한 방법으로 완전히 불활성화한 후 폐기한다.
 -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존가치가 높거나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다른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의 종료보고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계획, 보관 장소 및 안전관리 방법에 대하여 시험·연구기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존할 수 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5장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

제16조(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험·연구기관장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 자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 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한다.

제6장 역할 및 책임

- **제17조(질병관리청장)** 질병관리청장은 유전자재조합실험에 대한 생물안전을 확보하고, 이 지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- 1. 이 지침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
 - 2.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
 - 3. 생물안전 교육 홍보
 - 4.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 · 외 정보수집 및 교류
 - 5.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를 위한 위해성평가 및 새로운 유전자재조합기술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수준에 미 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·연구
 - 6. 기타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 - 7.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 조치
- 제18조(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) ① 제17조 제2호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
 - 1.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목록 개정
 - 2. 생물학적 밀폐 및 면제실험의 범위 목록 개정
 - 3.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
 - 4. 기타 실험실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 - ② 유전자재조합실험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분자생물학, 생명공학, 미생물학, 감염학, 생물안전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한다.
- 제19조(시험·연구기관장) 시험·연구기관장은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 - 1.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명
 - 2. 생물안전관리자 지정
 - 3.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·개정

- 4. 연구시설의 설치 ·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
- 5.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에 대한 관리 및 감독
- 6. 시험 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 실시
- 7. 기타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- 8.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 강구

제20조(기관생물안전위원회) ① 제19조 제1호에 따른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,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내・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험・연구기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. 단, 시험・연구기관의 규모 등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, 해당 업무를 외부 기관생물안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- 1.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
- 2.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- 3.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・개정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- ②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시험·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.

제21조(생물안전관리책임자)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험 • 연구기관장을 보좌한다.

- 1.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
- 2.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
- 3.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
- 4.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 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제22조(시험·연구책임자) 시험·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- 1.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
- 2.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관리 감독
- 3. 시험・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・훈련
- 4.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
- 5.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제23조(시험・연구종사자) 시험・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
- 1. 생물안전 교육・훈련 이수
- 2.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
- 3. 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낀 경우, 또는 중증 혹은 장기간의 병에 걸린 경우 시험·연구책임자 또는 시험·연구기 관장에게 보고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4.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

제7장 교육・훈련 등

- 제24조(교육・훈련) ① 시험・연구기관장은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험・연구종사자 등에 대하여 생물안전 교육・훈련을 년 1회 이상(시험・연구종사자는 년 2시간 이상,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 전관리자는 년 4시간 이상) 실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・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생물체의 위험군에 따른 안전한 취급기술
 - 2. 물리적 밀폐 및 생물학적 밀폐에 관한 사항
 - 3.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
 - 4.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
 - 5. 생물안전관리규정 내용 및 준수사항
- 제25조(기록관리) ①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시험·연구기관장은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1제9-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.
 - ② 3, 4등급 연구시설의 경우 시설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비 및 장비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기록한다.
 - 1. 양문형 고압멸균기
 - 2. 생물안전작업대
 - 3. 헤파 필터 유닛
 - 4. 폐수처리 장치
 - 5. 차압계
 - 6. 출입제한장치
 - 7. 통신장비
- 제26조(생물안전관리규정) 시험 · 연구기관장은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물안전관리 규정을 제정 · 준수한다.
 - 1.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및 취급관리
 - 2. 연구시설의 책임자 및 운영자의 지정
 - 3. 연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
 - 4. 기타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
- 제27조(건강관리) 시험・연구기관장은 시험・연구종사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.
 - 1. 정기적인 건강검진

- 2. 실험구역 내에 감염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건강검진 및 적절한 사전 사후 조치
- 3. 시험·연구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즉시 조사 및 필요한 조치
 - 가.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실수로 마시거나 흡입한 때
 - 나.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하여 피부가 오염된 때
 - 다.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출 등에 의하여 연구시설이 현저하게 오염된 경우 그 장소에 있었을 때
- 제28조(보칙)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그 평가방법 등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.
- 제29조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(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재검토기한)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3-18호,2023.1.27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